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2. 1. 6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6일

고흥군의회의장 송 영 현

규칙 제2022-37호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및 고흥군의회 사무과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①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결원, 출장, 그 밖에 사고(이하 "사고"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.
2.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0조에 따른다.

② 고흥군의회 사무과장(이하 "사무과장"이라 한다)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서로 대리 한다.

③ 전문위원,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

의하여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
2.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·의결된 자의 경우
3.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직무대리 명령서

1. 피 대 리 직명 :

2. 대 리 자의 직위와 성명 :

3. 대리기간 :

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.

년 월 일

고흥군의회 의장 (인)